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: 2023. 9. 19.(화) 11:00 이후(9. 20.(수) 조간) / 배포 : 2023. 9. 19.(화)

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한다

- 9월 20일부터 「교통안전법」 시행령 등 입법예고… 교통안전 관리 강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**교통안전업무** 담당자 **전문교육 의무화**, **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**, **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** 등 **교통안전제도**의 **세부내용을 규정**하기 위해 「교통안전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**입법예고**(9.20.~10.30.)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는 4월 통과된 「교통안전법」 개정내용*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, 화물 운송산업정상화방안('23.2)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. *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

□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○ 교통안전업무 **담당자 역량 제고**를 위해 '전문교육의 종류·대상·방법' 등 **교통안전 전문교육**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.

○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**대형 화물자동차***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

* 대형 화물자동차(최대적재량 25톤 이상), 견인형 특수자동차(총 중량 10톤 이상)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**비사업용 화물차**를 운영하는 **업체**를 **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**에 **포함**하여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.

○ **교통시설 설치·관리자**가 수립하여 제출하는 **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·평가 주기**를 **단축**(5년→3년)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.

□ **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**은 "이번 개정을 통해 **교통안전 인력 역량**을 **향상**시키고, **화물자동차 교통안전**에 **기여**할 것으로 기대한다"면서,

○ 이번 **제도개선**이 현장에서 **정착**되고 **국민의 교통안전**이 더욱 **강화**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□ 개정안 전문은 **국토교통부 누리집**(http://www.molit.go.kr)의 "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"에서 확인 가능하고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**우편**, **팩스**, **국토교통부 누리집**을 통해 의견을 제출*할 수 있다.

*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과 / 전화: 044-201-3866 / 팩스 044-201-5586
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구중 (044-201-32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일보 (044-201-3863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교통안전법 시행령(시행규칙) 개정안 (요약)**

□ 개정사유

○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('23.4.18 법개정)에 따라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 (위탁교육기관, 교육대상, 종류, 방법 등)

○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마련 (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 '23.2.6 등)

* 운행기록장치(DTG) 제출 의무화 대상 및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 확대

○ 공단업무의 타기관 이관·개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각종 계획 수립 기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,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심사주기 단축으로 실효성 제고 등

□ 주요내용

○ **(전문교육)** 교육대상은 국토부·지자체 교통안전담당 공무원(21h), 교통 시설설치·관리자의 안전담당 직원(14h), 운행제한단속원(14h) 등

* 위탁교육기관은 국토부/시·도 교육기관, 교통안전공단, 기타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지정

○ **(교통안전강화)** 운행기록장치(DTG) 제출 의무화 대상에 25톤 이상 화물차 및 10톤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포함하고, 비사업용 화물차(쿠팡 등)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

○ **(공단업무조정)**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라 2개 교육업무*는 민간에 개방하고, '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'은 지방청에 이관하는 근거 마련

* 교통안전담당자 교육, 교통안전관리자 면제 교육

○ **(계획수립기한)**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기한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선

* 기존에는 계획수립 기한이 시행령에 빠듯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실과 불일치

○ **(기타)**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확인·평가 주기를 단축(5→3년)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, 각종 용어정리 등